

의안번호	2201484
의 퇴 인	박수영 의원
회 답 일	2024. 7. 9.
추 계 번호	24F1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세액공제율 10%p 상향, ②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③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세액공제율 10%p 상향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658억원, 2035년 3조 2,744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간 총 32조 3,910억원(연평균 2조 9,44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미공제액 규모 및 공제시기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35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안 제10조 제1항)	-	-16,253	-16,740	-17,242	-17,760	-18,293	-18,841
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안 제24조 제1항 단서) ¹⁾	-11,658	-12,074	-12,507	-	-	-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안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¹⁾	-	-8,839	-9,105	-9,378	-9,660	-9,950	-10,249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 연장(안 제144조 제1항)		추	정	곤	란		
계	-11,658	-37,166	-38,352	-26,621	-27,420	-28,243	-29,09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안 제10조 제1항)	-19,407	-19,989	-20,588	-21,206	-186,319	-18,632
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안 제24조 제1항 단서) ¹⁾	-	-	-	-	-36,239	-12,08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안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¹⁾	-10,557	-10,874	-11,201	-11,538	-101,352	-10,135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 연장(안 제144조 제1항)		추	정	곤	란	
계	-29,964	-30,863	-31,790	-32,744	-323,910	-29,446

주: 1)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4년 12월 31일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 30%, 중견 30%, 중소 40% - (개정안) 대 40%, 중견 40%, 중소 50%	
2	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3년 투자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4년 12월 31일 ○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 15%, 중견 15%, 중소 25% - (개정안) 대 25%, 중견 25%, 중소 35%	
3	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미공제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 확대 - 이월공제 기간: (현행) 10년 → (개정안) 20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3	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2027년 발생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2035년 발생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세액공제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로 확인한 2023년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을 전망
 - － R&D 세액공제의 경우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²⁾에서 전망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 －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2023)」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 국가전략기술 R&D·투자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R&D에 대해서는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앞서 전망한 공제액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제액 증가효과를 계산
 -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1) 기획재정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2023. 12.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조세지출예산서³⁾ 및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를 참조하여 2023년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잠정치)를 기업규모·기술별로 추정
 -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2023)」상 기업규모별 투자계획 증감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 추계 시 이를 고려함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따라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이외에도 개정안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R&D 및 투자 세액공제 관련 미공제액 규모 및 공제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3) 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 9.

3. 상세 추계내역

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

-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일반 R&D(당기분)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3 (한도 10%)’ 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

[표 2]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증가분	25	40	50
	당기분	최대 2 ²⁾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30 ¹⁾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30~40	40~50

주: 1)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 25~40% 적용함

2)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 로 계산함

□ (공제실적) 2023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잠정 실적은 총 1조 1,968억원 수준

[표 3]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2~2023년

(단위: 억원)

	2022	2023(잠정)
중소기업	18	32
중견기업	0	9
대기업	4,506	11,927
계	4,524	11,968

자료: 국세청 및 기재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 ('24년) 2.5%, ('25년) 3.0%

※ 2026년 이후는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4]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2023	2024	2025	...	2034	2035
중소기업	32	33	33	...	44	45
중견기업	9	9	9	...	12	13
대기업	11,927	12,130	12,433	...	16,222	16,709
계	11,968	12,171	12,476	...	16,278	16,7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는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표 5]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	2034	2035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878	904	...	1,112	1,145
	국가전략 공제율 기준 (B)	12,850	13,236	...	16,278	16,766
	차이 (B-A)	11,972	12,331	...	15,166	15,6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p 상향하는 내용
 - 현행 공제율(%): 대 30, 중견 30, 중소 40
 - 개정안 공제율(%): 대 40, 중견 40, 중소 50

[표 6]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에 따른 공제액 변화: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	2034	2035
현행 세액공제율 기준 (A)	12,850	13,236	13,633	...	16,278	16,766
개정안 세액공제율 기준 (B)	17,130	17,644	18,174	...	21,700	22,351
차이 (B-A)	4,280	4,409	4,541	...	5,422	5,5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1조 6,253억원, 2035년 2조 1,2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8조 6,319억원(연평균 1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 (안 제10조 제1항)	-16,253	-16,740	-17,242	-17,760	-18,293	-18,841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19,407	-19,989	-20,588	-21,206	-186,319	-18,632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상향

(1)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

□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

- 당기분 공제율(%): (일반) 대 1 → 3, 중견 5 → 7, 중소 10 → 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 → 6, 중견 6 → 10, 중소 12 → 18
- 증가분 공제율(%): 3 → 10

□ 개정안은 현행 2023년 투자분에만 적용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표 8]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단위: %)

	기본				임시 투자 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5	15	25	10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도 개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 기술 시설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2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4%)를 적용함
 - (기본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13%p 우대
 - (추가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p 우대

[표 9]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차이

(단위: %)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3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공제실적) 2023년 잠정실적 기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500억원 수준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483억원, 중견기업 9억원, 중소기업 8억원 수준

[표 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 2023년(잠정치)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8	9	7,483	7,500

자료: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①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2023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액)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

-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치에서 국가전략기술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별·기술별로 안분
 - － 기업규모별 세액비중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규모별로 안분
 - － 명세서상 일반 및 신성장·원천 R&D 당기발생세액 비중(2022년 기준)을 기준으로 기술별 안분
- (국가전략기술) 기획재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상 수치를 인용하여 활용

[표 11]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관련 공제액 추정: 2023년 기준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투자	3,172	783	2,789	6,744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16	177	6,146	6,538
국가전략기술 투자	8	9	7,483	7,500

자료: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청 제출자료, 기재부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설비투자계획조사」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세액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후,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2023~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잠정): 대 -5.3%, 중견기업 9.8%, 중소기업 5.8%
 -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망): 대 3.0%,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6.5%
 - ※ 2025년 이후는 2024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변화
 - 당기분 세액공제율(%): (일반) 대 1→3, 중견 5→7, 중소 10→12
(신성장·원천기술) 대 3→6, 중견 6→10, 중소 12→18
 - 증가분 세액공제율(%):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3→10
(국가전략기술) 4→10

[표 12]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3,817	4,066	4,330
	중견기업	1,099	1,146	1,195
	대기업	8,715	8,976	9,246
	소계	13,631	14,188	14,771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B)	중소기업	5,880	6,262	6,669
	중견기업	1,973	2,058	2,147
	대기업	20,350	20,960	21,589
	소계	28,203	29,281	30,405

차이 (B-A)	중소기업	2,063	2,197	2,340
	중견기업	874	912	951
	대기업	11,635	11,984	12,343
	소계	14,572	15,093	15,6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계획조사」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

- 「설비투자계획조사(2023)」 상 2023~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
 -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잠정): 대 -5.3%, 중견기업 9.8%, 중소기업 5.8%
 -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전망): 대 3.0%, 중견기업 4.3%, 중소기업 6.5%
- ※ 2025년 이후는 2024년과 동일한 투자 증감률을 적용

[표 13]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	2033	2034	2035
중소기업	8	9	10	...	15	16	17
중견기업	10	10	11	...	14	15	16
대기업	7,086	7,299	7,518	...	9,246	9,524	9,809
계	7,105	7,318	7,538	...	9,275	9,554	9,842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023)」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 15, 중견 15, 중소 25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 3, 중견 6, 중소 12

[표 14]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	2033	2034	2035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A)	1,513	1,558	...	1,862	1,918	1,976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기준 (B)	7,538	7,765	...	9,275	9,554	9,842
차이 (B-A)	6,026	6,207	...	7,413	7,636	7,8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③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p 상향하는 내용
 - 현행 공제율(%): 대 15, 중견 15, 중소 25
 - 개정안 공제율(%): 대 25, 중견 25, 중소 35

[표 15]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에 따른 공제액 변화: 2026~2035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	2034	2035
현행 세액공제율 기준 (A)	7,538	7,765	7,998	...	9,554	9,842
개정안 세액공제율 기준 (B)	12,561	12,939	13,328	...	15,920	16,399
차이 (B-A)	5,023	5,174	5,329	...	6,365	6,5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투자분까지 3년 연장,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658억원, 2035년
1조 1,538억원 등 2025년부터 2035년까지 11년간 총 13조 7,591억원
(연평균 1조 2,5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법인세는 11년간 총 17조 1,988억원 감소하나, 농어촌 특별세 과세(3조 4,398억원)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13조 7,591억원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5~2035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안 제24조) ¹⁾	-11,658	-20,913	-21,612	-9,378	-9,660	-9,950	-10,249
-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11,658	-12,074	-12,507	-	-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8,839	-9,105	-9,378	-9,660	-9,950	-10,249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안 제24조) ¹⁾	-10,557	-10,874	-11,201	-11,538	-137,591	-12,508
- 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	-	-	-	-	-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10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10,557	-10,874	-11,201	-11,538	-101,352	-10,135

주: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